

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보도일시 | 2020.5.15.(금) 09:30부터 보도 가능 |  |
| 담당   | 공정거래위원회<br>경제민주화추진팀         | 팀 장 전상훈 (044-200-4311)<br>사무관 신용호 (044-200-4312)<br>사무관 안석우 (044-200-4313) |
|      | 기획재정부<br>계약제도과              | 과 장 김준철 (044-215-5210)<br>서기관 박주언 (044-215-5214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고용노동부<br>고용차별개선과            | 과 장 이창길 (044-202-7570)<br>서기관 한진선 (044-202-7572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국토교통부<br>건설정책과              | 과 장 주종완 (044-201-3504)<br>사무관 이기림 (044-201-4597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중소벤처기업부<br>상생협력정책과          | 과 장 이은청 (042-481-8957)<br>사무관 정의경 (042-481-3981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금융위원회<br>금융소비자정책과           | 과 장 김기한 (02-2100-2630)<br>사무관 김영근 (02-2100-2642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‘코로나19’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 발표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·중소기업·소비자·근로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 발굴 -

■ 더불어민주당(이하 당)과 정부\*는 2020년 5월 15일(금)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·정·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‘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’ 을 발표했다.

\* 공정거래위원회,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금융위원회

○ ‘코로나19’로 인한 경제·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,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 방안들을 발굴했다.

■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·28개 과제들로서,

- ① ‘소상공인·자영업자 영업 환경 개선’ 분야의 경우 ▲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, ▲가맹·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
- ② ‘중소기업 창업·거래·피해 구제 기반 강화’ 분야의 경우 ▲창업 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, ▲하도급·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
- ③ ‘소비자 권익 보호’ 분야의 경우 ▲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, ▲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
- ④ ‘근로자·특고 권리 강화’ 분야의 경우 ▲특수 고용 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 확대, ▲공공 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.

■ 정부는 조속한 ‘코로나19’ 극복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## I 추진 배경 · 필요성

- 최근 ‘코로나19’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지면 공정경제 정책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.
- 특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·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\* 이들에 대한 보호 · 지원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.

### \* 관련 보도

- ▶ 코로나19 자영업자 직격탄 확인... 90% “최근 한달 소득 줄었다” (뉴스1, '20.3.6.) : 한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90%에 달함
- ▶ “○○택배, 코로나19 호황 누리면서 기사몹 수수료 깎아” (연합, '20.3.23.) : 택배사가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도 택배기사 몹의 수수료를 깎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함

- 그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 · 금융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 시책 외에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‘코로나19’를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 ·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.
- 가맹 · 대리점주,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 행위, 불공정 행위는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,
-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 상권,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‘코로나19’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.
- 팬데믹(감염병 대유행)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소비자-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 기준 마련, 배달 종사자 등 특수 고용 노동자의 보호 강화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들이다.
- 이와 같은 ‘코로나19’ 극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, 법률 개정 대비해 비교적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하위 규정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.

## 1

## 소상공인·자영업자 영업 환경 개선

- ▶ 외식업 등 ‘코로나19’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.
- ▶ ‘코로나19’ 상황을 틈타 가맹·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,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된다.

### 1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‘골목형 상점가’ 지정 기준 마련 (중기부)

- ‘음식점 밀집 지역’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, 특성화 시장 육성,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### 2 민관 합동 자율 사업 조정 협의회 도입 (중기부)

-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·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,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.

### 3 생계형 적합 업종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마련 (중기부)

-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 업종\*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·개시하는 등 생계형 적합 업종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.

\* 서점업, 자판기 운영업, LPG소매업, 일부 식품업(두부, 고추장, 간장, 된장 등)

### 4 가맹·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(공정위)

-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, 교육·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, 피자, 커피, 교육, 세탁, 이·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·세분화할 예정이다.

-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, 의류,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으나, 가구, 가전, 도서 출판,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.

#### 5 가맹분야 현장 밀착형 종합 지원 체계 마련 (공정위)

- 합리적 창업 지원 상담·교육, 본사-점주 간 분쟁·갈등 완충, 상생 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‘가맹 종합 지원 센터’가 지정·운영된다.

#### 6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판단 기준 마련 (공정위)

-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.

## 2 중소기업 창업·거래·피해 구제 기반 강화

- ▶ ‘코로나19’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·벤처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.
- ▶ 하도급 업체가 ‘코로나19’ 발 공급 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·납품 대금 수급 여건이 개선된다.
- ▶ ‘코로나19’로 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, 공 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 행위가 보다 엄격히 차단된다.

#### 7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(중기부)

- 창업 초기 기업에게 사업 공간, 경영·기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·연구소 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이 ‘현행 창업 만 3년 이내’ → ‘5년\* 이내(30%범위내) 기업’으로 확대된다.

\* 기업 생존율 : 1년차 65.0%, 2년차 52.8%, 3년차 42.5%, 4년차 35.6%, 5년차 29.2% (통계청 기업생멸통계, '19.12월) → 창업 후 4~5년차 기업의 도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음.

**⑧ 하도급·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** (공정위·중기부)

-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**중소기업 협동조합**이 중견 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, 조정 협의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(현행: 매출액 3,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정)으로 **확대**하고,
  - 협의 요청도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(현행: 계약 체결 이후 60일 경과)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  - 또한, 상생 협력법상 **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**를 운영하는 기업은 상생 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해줄 계획이다.

**⑨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** (공정위)

- 하도급 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할 필요가 있고, 현재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 구제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\*해 주고 있다.
  - \* 피해액 전부 구제 시 20% 이내 감경, 피해액 50% 이상 구제 시 10% 이내 감경
  - 앞으로는 서면미교부 등 피해 산정이 곤란한 법 위반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, 감경 비율도 현행 감경 비율에 10%p 상향할 계획이다.

**⑩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유예 장치 마련** (중기부)

-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도중 특허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되더라도, 조정 사건을 ‘종료’ 처리하지 않고 일시 ‘중지’해놓고 해당 법적 절차가 종료되면 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한다.
  - \* 조정 진행 중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,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하여 조정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

**⑪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판단 기준 마련** (공정위)

- ‘코로나19’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, 오프라인·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.
  - 이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입점 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*12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(기재부)**

- 공공기관 계약 제도 혁신 전담팀(T/F)(관계 부처·공공기관·업계 합동)를 통해 공공기관이 부당특약 설정, 부당한 인사·경영 개입 등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·관행 등을 면밀하게 발굴·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**13 발주기관의 용역 근로자 교체 요구권 개선 (기재부)**

-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용역 근로자를 교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 태만·부정 행위 등 구체적인 교체 사유를 들어, 계약 상대방과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‘용역 계약 일반 조건’을 개선할 계획이다.

**14 수·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 사례 구체화 (중기부)**

- 수·위탁거래에 있어, 위탁기업의 상생 협력법 위반 사례들을 구체화 하여 ‘수·위탁거래 공정화 지침’(2018년 11월 제정)에 반영할 계획이다.

**15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(중기부)**

- 상생 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가 현재는 ‘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’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, 앞으로는 2회 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.

**3 소비자 권익 보호**

- ▶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(pandemic)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-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마련된다.
- ▶ 생활 밀접 분야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선 되고, 소비자 정보 제공이 보다 강화된다.
- ▶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,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(CCM)이 보다 촉진된다.

**16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 마련 (공정위)**

- ‘코로나19’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,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, 위약금 면제 및 조정·감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*17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 기준 개선 (공정위)**

- 가구의 품질 보증 기간을 규정하는 등 생활 밀접 분야를 대상으로 분쟁 해결 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.

**18 출산·보육,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(공정위)**

-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,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출산(산후조리원)·보육(어린이집·유치원), 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.

**19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 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(공정위)**

-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SNS 인플루언서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경우,
  -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‘추천·보증 등에 대한 표시·광고 지침’을 개정할 계획이다.

**20 금융 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 원칙 구체화 (금융위)**

- 금융 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6대 판매 원칙\*을 모든 금융 상품에 원칙 적용하고,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.

\* 고객의 적합성·적정성 확인, 설명 의무 준수, 부당 권유·불공정 영업·허위 과장 광고 금지

**21 금융 상품 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기준 마련 (금융위)**

-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, 내부 통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 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.

**22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의 신뢰성·수용성 제고 (금융위)**

-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, 조정 당사자의 위원회 출석·항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.

**23 소비자 중심 경영(CCM) 도입 활성화 (공정위)**

-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심사 기준 정비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, 우수 기업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.

## 4 근로자·특고 권리 강화

- ▶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무 제공 여건이 개선된다.
- ▶ 건설 노동자,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 혜택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.

### 24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(특고) 노무 제공 조건의 공정성 강화 (고용부)

- ‘퀵기사, 대리기사, SW개발자’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, ‘배달 기사, 보험 설계사’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 제공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.
- 아울러, 노무 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### 25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 보험 적용 확대 (고용부)

-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(현재 택배 기사 등 9개 직종)에 ‘방문 판매원,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, 방문 교사, 가전 제품 설치 기사, 화물차주’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새로운 고용 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 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.

### 26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 기준 명확화 (고용부)

-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하여 특고 노조 설립·운영 시 활용토록 하고,
- 추가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노동조합 운영·활동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

## 27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(국토부)

-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·하청, 자재·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\*한다.

\* 5,000만 원→3,000만 원이상 계약,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·장비 근로자 추가 등

## 28 공동 근로 복지 기금 조성 활성화 (고용부)

- 대·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 근로 복지 기금\*이 산업 단위·지역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,
  -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.

\* 둘 이상의 사업주(대·중소기업 간, 원·하청 간, 산업·업종별 등)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(사업장별로 설치되는 사내 복지 기금과 구별)

### I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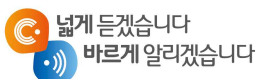
## 향후 계획

□ 정부는 조속한 ‘코로나19’ 극복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실제 거래 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당과 함께 점검하고, 필요 시 개선·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【붙임1】 과제별 추진 일정

【붙임2】 ‘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’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 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공정거래위원회 : [www.ftc.go.kr](http://www.ftc.go.kr),  
기획재정부 : [www.moef.go.kr](http://www.moef.go.kr)  
고용노동부 :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  
국토교통부 : 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  
중소벤처기업부 : [www.mss.go.kr](http://www.mss.go.kr)  
금융위원회 : 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



**붙임1**

**과제별 추진일정**

| 번호 | 과제명 | 부처 | 일정 |
|----|-----|----|----|
|----|-----|----|----|

**① 소상공인·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**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① |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‘골목형 상점가’ 지원기준 마련 | 중기부 | ’20.7월      |
| ② |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             | 중기부 | ’20.6월      |
| ③ |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       | 중기부 | ’20.8월      |
| ④ | 가맹·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      | 공정위 | ’20.6,9,12월 |
| ⑤ |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체계 마련           | 공정위 | ’20.6월      |
| ⑥ |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        | 공정위 | ’20.7월      |

**② 중소기업 창업·거래·피해구제 기반 강화**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⑦ |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           | 중기부        | ’20.9월           |
| ⑧ | 하도급·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          | 공정위<br>중기부 | ’20.9월<br>’20.7월 |
| ⑨ |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   | 공정위        | ’20.8월           |
| ⑩ |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     | 중기부        | ’20.12월          |
| ⑪ |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| 공정위        | ’20.12월          |
| ⑫ |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        | 기재부        | ’20.9월           |
| ⑬ |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완화      | 기재부        | ’20.6월           |
| ⑭ | 수위탁거래 범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       | 중기부        | ’20.7월           |
| ⑮ | 상습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     | 중기부        | ’20.7월           |

### ③ 소비자 권익 보호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⑯ |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   | 공정위 | '21.1Q  |
| ⑰ |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           | 공정위 | '21.1Q  |
| ⑱ | 출산·보육,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        | 공정위 | '20.10월 |
| ⑲ |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| 공정위 | '20.9월  |
| ⑳ | 금융상품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 구체화           | 금융위 | '21.3월  |
| ㉑ |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      | 금융위 | '21.3월  |
| ㉒ |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신뢰성수용성 제고            | 금융위 | '21.3월  |
| ㉓ | 소비자중심경영(CCM) 도입 활성화             | 공정위 | '20.10월 |

### ④ 근로자·특고 권리 강화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㉔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  | 고용부 | '20.下 |
| ㉕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    | 고용부 | '20.下 |
| ㉖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| 고용부 | '20.下 |
| ㉗ |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  | 국토부 | '20.下 |
| ㉘ |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          | 고용부 | 연중상시  |